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박상혁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1884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4년 05월 27일

발 의 자: 박상혁, 김경훈, 김규남,
김길영, 김영철, 김재진,
김지향, 김춘곤, 김태수,
김형재, 김혜영, 남궁역,
남창진, 민병주, 박 석,
박성연, 박영한, 박춘선,
송경택, 옥재은, 유만희,
유정인, 이상욱, 장태용,
허 훈, 홍국표, 황철규
의원(27명)

1. 제안이유

-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녹지생태도시, 디자인 혁신, 스마트 도시 등 서울시 도시정책을 실현·육성하는 혁신공간으로 재편해야 함
- 이에 용적률 체계 통합 및 단순화를 통해 도시변화에 대응·지원하는 유연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를 마련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규정 신설(안 제55조제7항제1호~제2호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5조제7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법 제52조 및 제78조제7항과 영 제46조 규정
2. 제5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10퍼센트 이하 (제55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지역에 한한다.)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5조(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) ① ~ ⑥ (생략)</p> <p>⑦ 법 제51조·영 제43조 및 이 조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안에서의 용적률은 이 조의 규정과 법 제52조 및 영 제46조의 규정의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 <p>⑧ ~ ⑫ (생략)</p>	<p>제55조(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⑦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<u>법 제52조 및 제78조제7항과 영 제46조 규정</u></p> <p>2. <u>제5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10퍼센트 이하 (제55조 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지역에 한한다.)</u></p> <p>⑧ ~ ⑫ (현행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55조(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)제7항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국토계획법 및 동법 시행령 규정의 범위 안에서 별도로 정하는 것으로 정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손감소나 재정 지출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재정분석담당관
담 당 관	오희선
추계세제팀장	김중헌
추 계 분 석 관	김지혜

☎ 02-2180-7953
e-mail : kjh0123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